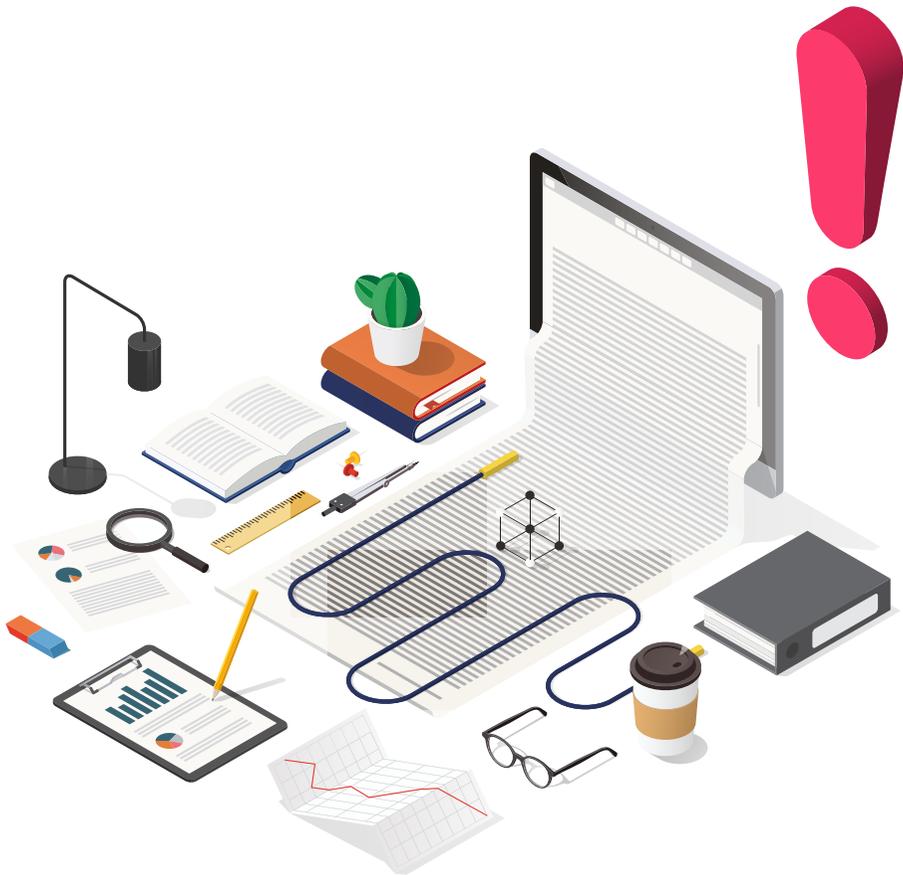


Patent Consulting Center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www.pcc.or.kr](http://www.pcc.or.kr)



## CONTENTS

01. 공익변리사의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04
02.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06
0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	08
04.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10
05. 지식재산 분쟁경영 컨설팅 및 기타서비스	12
06. 사업별 지원대상 및 증명자료	14
Q&A	18
우수사례	22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공익변리사가 지키겠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청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특허상담센터는 2005년 4월 개소하여 2010년까지는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위주의 무료 변리 서비스 업무를 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특허법률구조 업무를 통합하여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업무와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허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명세서 등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된 상담
-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및 분쟁조정 지원, 설명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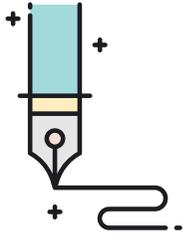


# 01.

## 공익변리사의

# 심판·심결취소소송 지원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 심판 또는 소송에 해당할 것
-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서류 제출기한이 정해진 사건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을 것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관련 서류 및 신청시기



- 신청관련 서류
  - ① 심판·소송 대리 지원신청서
  - ②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③ 등록원부 또는 등록공보
  - ④ 주장사실 증명서류(경고장, 침해품 사진, 침해품 판매사실 증명서류 등)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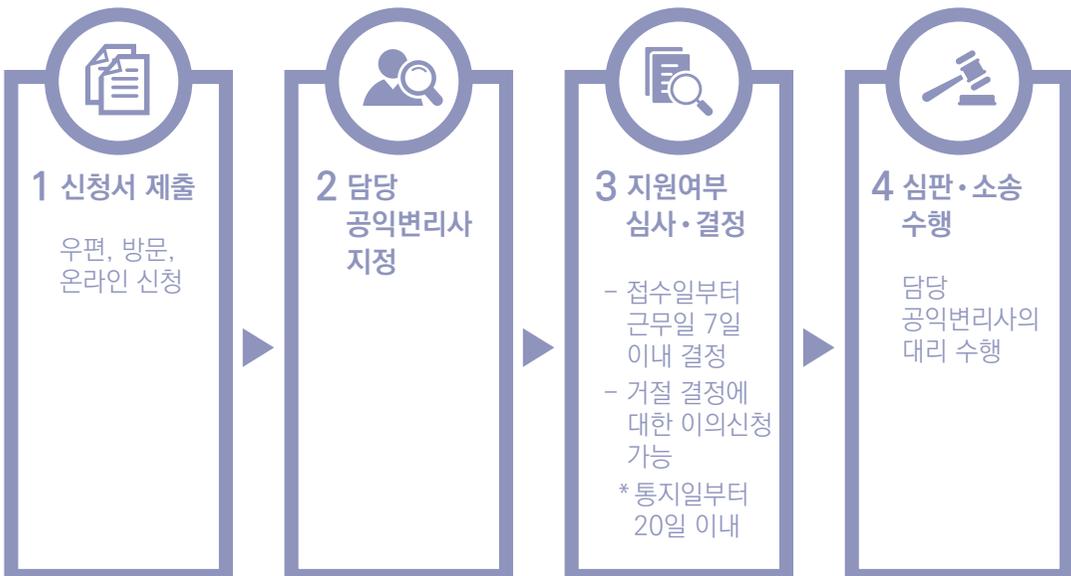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사건

구 분	권리범위확인		무 효	정 정	등록취소
	권리자	비권리자			
특허· 실용신안	☑		☑	☑	
디자인	☑	☑	☑		
상표	☑	☑	☑		☑

• 디자인·상표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소송을 제외하고  
모두 '권리자'만 지원

## 지원절차





## 02.

#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국내 법인인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법원 접수 전 또는 계속 중인 경우 모두 가능
- 지원여부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
-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관련 서류 및 신청시기



- 신청관련 서류
  - ①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서
  - ②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③ 등록원부 또는 등록공보
  - ④ 주장사실 증명서류(경고장, 침해품 사진, 침해품 판매사실 증명서류 등)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신청인당 동일 회계연도 내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내 2,000만원 이하
  -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 소진시 지원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사건 승소시 지원금액 50% 이내의 성공사례금 지급 가능(소송비용을 센터에 반납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절차





# 03.

## 산업재산권 창출 서류작성 지원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지원대상 서류에 해당할 것
- 등록요건을 갖출 것
- 지원한도(동일 회계연도에 1인당 권리별 1건)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신청관련 서류 및 신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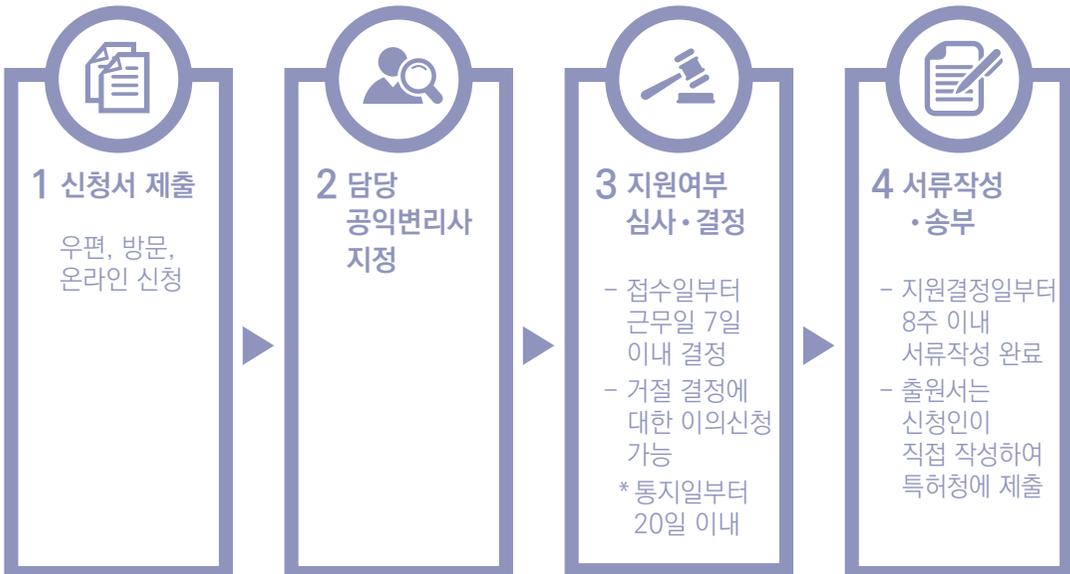
- 신청관련 서류
  - ① 서류작성 지원신청서
  - ②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③ 발명설명서 또는 디자인설명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상표 제외)
-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출원 관련 중간 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

## 지원절차





# 04.

##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문자 상담



- 상담 신청인의 편의성을 위해 예약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희망 일시를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 우리 센터의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리사로부터 직접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02-6006-4300

**업무 시간** 매주 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pcc.or.kr](http://www.pcc.or.kr)



## 지역 순회 상담



- 번리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은 우리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익변리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정해진 순회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역순회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순회상담지역



### 연락처

청주지역 지식재산센터 043-229-2732

구미지역 지식재산센터 054-454-6613

대구지역 지식재산센터 053-242-8080

진주지역 지식재산센터 055-762-9411

포항지역 지식재산센터 054-274-5533

울산지역 지식재산센터 052-228-3087

부산지역 지식재산센터 051-714-6761

목포지역 지식재산센터 061-242-8587

제주지역 지식재산센터 064-755-2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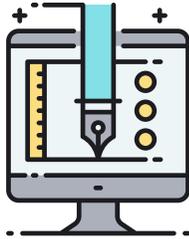


# 05.

## 지식재산

# 분쟁경영 컨설팅 및 기타서비스

### 지원요건



-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 컨설팅 신청 사안이 지원내용에 부합할 것

### 신청관련 서류 및 신청시기



- 신청관련 서류
  - ① 컨설팅 지원신청서
  - ②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자료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내용



- 복합 분쟁대응 : 산업재산권과 연관된 신지식재산권\*까지 컨설팅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적 분쟁대응 전략 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비권리자 보호 :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경고장 등 대응
- 분쟁예방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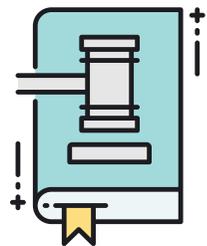
## 지원절차



## 기타 서비스

### •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지원 대상자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센터의 지원을 요청하면, 공익변리사는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타협의 가능성이 있을 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지원사업 설명회

각 지역 학교, 기관, 단체, 기업, 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 공익변리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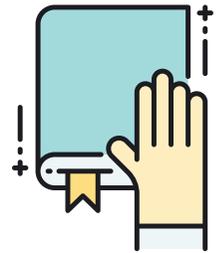


# 06.

## 사업별

# 지원대상 및 증명자료

### 서류작성 · 심판소송 · 컨설팅 지원대상



<p><b>소기업</b></p>	<p>1.사업자등록증사본 (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p> <p>2.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p> <p>*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p>	
<p><b>학생</b> (특수대학원생 제외)</p>	<p>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p> <p>1.재학증명서    2.휴학증명서    3.재적증명서</p>	
<p><b>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b></p>	<p>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p>	
<p><b>군복무수행자</b></p>	<p>복무증명서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포함)</p>	
<p><b>독립유공자</b> (및 그 유족 또는 가족)</p>	<p>본인</p>	<p>독립유공자증</p>
	<p>유족 또는 가족</p>	<p>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가족) 확인원 [발급처:국가보훈처]</p>

<b>국가유공자</b>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국가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원 [발급처:국가보훈처]
<b>5·18민주유공자</b>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인	5·18민주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발급처:국가보훈처]
<b>특수임무수행자</b> (및 유족 또는 가족)	본인	국가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발급처:국가보훈처]
<b>참전유공자</b>	본인	국가유공자증
<b>고엽제후유의증 환자</b>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b>「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b>	수급자 증명서	
<b>차상위계층</b>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하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2.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한정함)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처: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b>등록장애인</b>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b>다문화가족</b>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b>한부모가족</b>	한부모 가족증명서	

## 심판소송·컨설팅 지원대상



### 예비청년창업자

1. 만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처:국세청(홈택스)]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증빙서류

\* 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정함

### 청년창업자

1. 만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p><b>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b></p>	<p>1.사업자등록증 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p> <p><small>*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최근 3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small></p>	
<p><b>개인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b></p>	<p><b>소득이 있는 사람</b></p>	<p>1.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소득확인 자료</p> <p>가.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나.건강보험 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중 택일</p>
	<p><b>무소득자</b></p>	<p>1.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소득확인 자료</p> <p>가.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미가입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나.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p>



Q1

### 지원대상자만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 출원, 등록, 심사, 심판의 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상담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2

### 단순한 아이디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등록을 받기 어렵고,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당 내용과 유사한 종래 기술 및 그 기술이 가진 문제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발명으로 인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시오. 이때 실물 제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익변리사가 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해드립니다.

Q3

### 상표 출원에 대한 서류작성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상표는 창의적인 발명이나 창작적인 디자인과 달리 단순히 상표를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출원서류 작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에 대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전문 변리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출원 후 상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보정서’를, 등록공고 후 이의신청을 당한 경우 ‘이의신청답변서’ 등에 대한 작성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Q4

###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심판·심결취소소송 사건을 공익변리사가 직접대리하기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공익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약정서 및 위임장 제출 등)에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이후 공익변리사는 해당 사건에 맞는 심판·심결취소소송 관련 서류(청구서 또는 답변서, 소장 등)를 신청인을 대리하여 작성하게 되며 특허심판원 및 법원 요청 시 기술설명회, 변론 참석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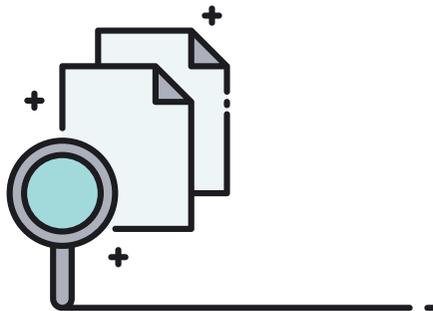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분쟁 중인’ 경우에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시면, 전문 기술 분야별로 지정된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승소가능성, 소송 관련 서류의 제출기한, 지원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거절 결정 시에는 거절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비용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1건당 1,0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하며, 최근 3년 이내에 2,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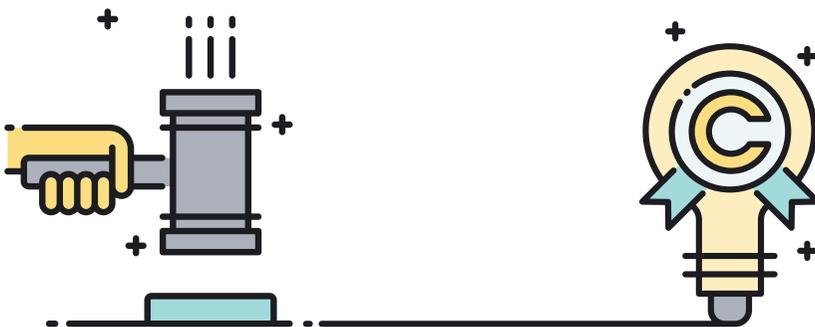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소송 이외의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이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우수 사례

1

### 대기업과의 분쟁,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쳐만 갑니다.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 1년여의 심사 기간을 거쳐 상표를 등록받아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동종업계의 대기업으로부터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심판을 청구 당하였다.

사실 상대방은 상표 등록 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려고 했던 바 있었고, 이와 비슷한 취지로 무효심판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에 지쳐갔다. 공익변리사는 상대방의 공세에 반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분쟁조정에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 우수 사례



2

### 내가 개발한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싶어요!

가죽 공예품 디자이너 B씨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관리 인력과 제도에 대한 이해 모두 부족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디자인 개발물의 출원 및 등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대다수 물품을 공지 및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의 표장을 제품에 부착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지만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익변리사는 현재 사용 중인 표장에 대해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선등록, 선출원 상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공예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해 드렸다.

또한 현재 판매를 준비 중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 지원을 하면서, 제품에 포함된 캐릭터 형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원작자의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 우수 사례

3

###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면?

가구 도소매업에 종사 중인 C씨, 어느 날 경쟁사로부터 C씨가 판매중인 테이블이 경쟁사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C씨는 경쟁사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부터 물품을 판매 중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경쟁사는 지속해서 판매중단을 요청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판매중인 제품의 원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의 생산일자가 6개월 전임을 확인하였으나, 경쟁사는 심사 과정에서 그보다 1년 앞선 날짜에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로 인한 디자인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익변리사는 등록디자인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물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디자인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는 방법을 권해드렸다.



# 우수 사례



4

## 오랜 기간 사용해온 상호가 상표권 침해라니요?

미용실을 운영 중인 D씨,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동종업계의 상표권자로부터 상호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았다.

D씨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특허상담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공익변리사는 신청인이 사용 중인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D씨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고 볼 수 있었으며, 혹여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보다 신청인의 상호 사용이 앞선 점을 근거로 '선사용권' 또한 주장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익변리사는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침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영업을 하시라고 조언해 드렸다.



